산업보건 주요 뉴스

중·소규모 건설 현장 집중 감독·점검

산업안전 감독 및 컨설팅·교육에 집중

고용노동부는 올해 2분기를 '중·소규모 건설 현장 집중 감독·점검 기간'으로 정하고 불시감독, 컨설팅,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. 이는 최근 중규모 건설공사 사망사고가 늘어나는 데 따른 것이다.

건설업 사고사망자는 2021년 357명에서 2022년 341명으로 16명 감소하고, 올해 1분기에도 12명 감소하였으나('22.1분기 73명 → '23.1분기 61명<잠정>), 중견·중소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50억~800억 원의 중규모 현장에서는 사망사고가 전년 대비 50.0% 급증했고(16→24명, 8명), 총 공사금액 1억~50억 원의 소규모 현장에서는 소폭 감소(27→23명, 4명)하는 데 그쳤다.

이에 고용노동부는 2분기에 중·소규모 건설 현장 불시감독을 집중하여 핵심 사망사고 위험요인 안전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개선을 유도하고, 컨설팅 및 교육 사업을 통해 건설사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지원한다.

먼저, 중규모 건설공사(50억~800억 원)에 대해 올해 감독 목표 물량의 약 40%에 해당하는 1,300개소를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한다. 소규모 건설공사(1억~50억 원)에 대해서는 사망사고 발생, 평가등급 저조(C.D등급) 등 취약 현장에 대한 불시감독과 함께 해당 기관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.

아울러, '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사업'을 본격 시작하여 500여 개 중견·중소 건설사를 대상으로 근로감독관(산업안전 분야)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가 합동으로 '자기규율 예방체계'를 지원하고, '안전교육의 날'을 활용하여(매월 셋째 주 수요일,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) 중규모 건설공사 현장소장을 대상으로 핵심 위험요인 확인·개선 절차, 최근 사망사고 사례 등에 관한 교육도 실시한다.

공업용 세척제 취급 사업장 산업안전보건감독 실시

자율개선 기간 부여 후 5월 집중 감독

고용노동부는 공업용 세척제(트리클로로메탄 등 11종)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다.
감독방식은 '위험성평가에 기반한 선(先) 자율 개선, 후(後) 집중 감독'으로, 앞서 기업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4월까지 자율 개선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. 세척공정 등을 보유한 사업장으로 하여금 자율개선 기간 중에 자체적(또는 안전보건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) 위험성평가를 통해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한 것이다.

한편 고용노동부는 2022년 공업용 세척제 취급 사업장 약 2,800개소를 지도하고, 이 중 299개소를 감독하여 41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, 과태료 1억5,270만 원을 부과하고, 5개소에 대해서는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린 바 있다.
올해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공동으로 공업용 세척제 취급 사업장 약 2,000개소에 감독 계획, 재해사례, 국소배기장치 설치비용 지원 내용 등을 미리 안내하여 사전 예방조치를 유도했으며, 중소기업의 국소배기장치 설치 비용 지원사업 시행도 안내했다.

5월부터는 트리클로로메탄 등을 공업용 세척제로 사용하는 전국 약 300개소에 대해 집중 감독을 할 예정이다. 이번 감독에서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와 3대 핵심 안전보건 조치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.

위험성평가는 현장의 노동자가 직접 참여해 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내 위험도를 낮추는 활동이며, 3대 핵심 안전보건 조치는 ❶유해성 주지, ❷국소배기장치 설치, ❸호흡보호구 착용으로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사항들이다.
감독 결과 3대 핵심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중조치가 내려질 방침이다.